

◎ 과태료 자진납부 의사 : 있음(), 없음()

☞ 자진납부 문의처 :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○○지원 ○○과(☎) (앞 쪽)

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

NO :

상 호 :

대표자 성명 :

귀하는 「식품산업진흥법」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과태료부과(예정)금액이 원에 해당됩니다.

과태료부과에 따른 의견이 있으시면(년 월 일)부터 (년 월 일)까지 조사원의 소속 기관에 우편·전화(각 지원 전화번호) 등으로 의견진술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년 월 일

조사원 소 속 :

직 급 :

성 명 : (인 또는 서명)

주 소 :

전화번호 :

※ 과태료부과 금액은 위반 행위 횟수에 따라 차등부과 합니다.

※ 이의신청 내용을 아래 서식에 기재하여 상기 조사원 주소로 우편 또는 전화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성 명 :
- 전화(휴대폰)번호 :
- 이의신청 내용(별지 작성 가능)

※ 의견제출기한(20일)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 하시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.

※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, 장애인(3급이상), 국가유공자(상이등급 3급이상), 미성년자는 추가적인 과태료 감경제도(100분의 50)가 있습니다.
- 감경대상자인 경우 신분증 등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금품·향응제공, 불편부당한 일처리 및 불친절 사례를 우편·전화·인터넷 등으로 알려주시면 공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.

- 주소 : (우39660) 경상북도 김천시 용전로 141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장
- 전화(FAX)번호 : 054-429-4122 (FAX : 054-429-4128)
- 인터넷 : www.naqs.go.kr